

의안번호	제 4 호
의결연월일	1999.

의결사항

사천시이장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연월일	1999. 8. 11.

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2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'99. 9. 11.

제출자 : 사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진사지방공단 조성과 사남농공단지의 가동 및 중소기업체 유치로 많은 인구가 유입됨에 따른 대단위 임대아파트(8동 468세대) 건립에 따라 이장의 업무 증가와 각종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리의 신설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이장정수 중 사남면 월성리의 정원 "2"를 "4"로 하고 관할구역인 "월성, 곡성일원"을 "월성1리, 월성2리, 월성3리, 곡성일원"으로 함.(안 별표)

현 행				변 경			
읍면동	이동면	정원	관할구역	읍면동	이동면	정원	관할구역
사 남 면	월 성 리	2	월성, 곡성일원	사 남 면	월 성 리	4	월성1리, 월성2리, 월성3리, 곡성일원

3. 법적근거

가.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

나.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

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5. 입법예고

가. 입법예고기간 : 1999. 7. 15~1999. 8. 3(20일간)

나. 예고방법 : 신문공고

다. 접수된 의견 : 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이장정수중 사남면 월성리의 정원중 “2”를 “4”로 하고, 관할구역중 “월성, 곡성 일원”을 “월성1리, 월성2리, 월성3리, 곡성일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